

□ KARA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 신·구 대비표(2018 vs 2019)

2018 규정	2019 규정 개정
제1부 1장 도덕헌장	
<p>제1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한다.</p> <p>제2조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p> <p>제3조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성숙한 모터스포츠 문화를 이룩한다.</p> <p>제4조 모터스포츠에 불건전한 행위를 삼가며, 모터스포츠인으로서 품위를 지킨다.</p>	<p>제1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한다.</p> <p>제2조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p> <p>제3조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성숙한 모터스포츠 문화를 이룩한다.</p> <p>제4조 모터스포츠에 불건전한 행위를 삼가며, 모터스포츠인으로서 품위를 지킨다.</p> <p style="color: red;">1. 선수, 오피셜, 팀 관계자 및 모터스포츠 관련업을 하는 모든 종사자는 남녀평등과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p>

제1부 2장 국내스포츠규정

제2조 용어와 정의

제2.1조 개요

이하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와 약칭은 국내스포츠규정과 그 부칙 및 부칙에 준한 모든 특별규정에서 적용되며,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

7. 대회 (Competition), 경기 (Event)

대회(Competition)는 개별 결과를 갖는 모터스포츠 활동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히트, 결승, 연습주행, 예선 주행과 카테고리별 결과로 구성된다. 경기 종류에는 서킷레이스, 랠리, 크로스 컨트리 랠리, 드래그 레이스, 힐 클라임, 기록 경기, 테스트, 트라이얼, 드리프트 등이 있으며 FIA의 재량에 따른 다른 형태의 경기들이 있다.

경기(Event)는 여러 개의 대회(Competition), 퍼레이드, 데모 주행, 투어링 어셈블리(Touring Assembly)등으로 구성되는 집합이다.

19.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

챔피언십은 시리즈 경기이거나 단독 경기일 수 있다. 오직 FIA만이 국제 관련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으며 오직 KARA만이 국내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다. 국내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는 오직 KARA나 KARA로부터 서면에 의해 승인된 주최자(대회주최자)만이 개최할 수 있다.

국내 챔피언십은 클래스별, 참가대상 선수별, 지역별 등의 구분이 가능하며,

제2조 용어와 정의

제2.1조 개요

이하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와 약칭은 국내스포츠규정과 그 부칙 및 부칙에 준한 모든 특별규정에서 적용되며, 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

7. **대회 경기 (Competition), **경가 대회 (Event)****

경기 대회(Competition)는 개별 결과를 갖는 모터스포츠 활동으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히트, 결승, 연습주행, 예선 주행과 카테고리별 결과로 구성된다. 경기 종류에는 서킷레이스, 랠리, 크로스 컨트리 랠리, 드래그 레이스, 힐 클라임, 기록 경기, 테스트, 트라이얼, 드리프트 등이 있으며 FIA의 재량에 따른 다른 형태의 경기들이 있다.

경가 대회(Event)는 여러 개의 **대회 경기**(Competition), 퍼레이드, 데모 주행, 투어링 어셈블리(Touring Assembly)등으로 구성되는 집합이다.

19.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

챔피언십은 시리즈 경기이거나 단독 경기일 수 있다. 오직 FIA만이 국제 관련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으며 오직 KARA만이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다.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는 오직 KARA나 KARA로부터 서면에 의해 승인된 주최자(대회주최자)만이 개최할 수 있다.

국내 챔피언십 대회는 최상위 클래스의 평균 엔트리 숫자가 6대 이상 가

<p>경기 당 평균 엔트리 숫자가 15대 이상 가능한 규모여야 한다.</p>	<p>능한 규모여야 한다. 만일 평균 엔트리 숫자가 6대 미만일 경우 챔피언십 대회 자격 유지 여부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p>
<p>제10조 오피셜 제10.1조 오피셜의 구성</p> <p>다음은 오피셜의 종류이며, 각각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p>	<p>제10조 오피셜 제10.1조 오피셜의 구성</p> <p>KARA의 심판원 라이선스를 소지한자가 오피셜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팀 관계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소속 팀이 참가하는 대회에 오피셜로 참가할 수 없다.</p> <p>다음은 오피셜의 종류이며, 각각 보조요원을 둘 수 있다.</p>
<p>제10.2조 감독권</p> <p>KARA는 국제스포츠규정 및 본 규정에 의해 총괄되는 국내의 모든 대회에 있어서 모터스포츠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p>	<p>제10.2조 감독권</p> <p>KARA는 국제스포츠규정 및 본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공인 대회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p> <p>1. KARA는 대회에 1명 이상의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으며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한 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의 안전시설(트랙노면 및 주변 안전시설, 레이스 컨트롤, 피트, 검차장, 의료장비 등)을 검수 할 수 있다. 2) 오피셜 인원 및 안전차량의 배치 등 경기운영 관련 안전사항을 검수할 수 있다. 3) 경기장 시설 및 대회운영을 감독하며, 문제 발생시 경기장과 대회주최자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와 개선을 요청을 할 수 있다. 4) 대회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장소의 출입이 가능하다.

	<p>단 심의중인 심사위원실과 레이스 중의 레이스컨트롤 등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p> <p>5) 대회운영에서 발생하는 대회 결과, 기록지, 보고서 등 대회 관련 자료를 보고 받을 권한이 있으며, 각 세션(드라이버 브리핑 등)의 종료 또는 공식기록(연습, 예선, 결승 등) 발표 후 사무국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p> <p>6) 대회 심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7) 감독관은 경기장 안전시설 및 대회운영의 미비점과 개선 내용을 협회에 보고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p> <p>2. 감독관의 임무</p> <p>1) FIA의 ISC 규정과 KARA의 국내규정 및 파견대회의 대회규정 (스포츠규정/기술규정)을 숙지하여야 하고 각 라운드에 적용된 특별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p> <p>2) 경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 전 경기장 측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검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스 컨트롤 및 CCTV 관리 상태, 무전기 상태, 메디컬 센터 관리 상태 - 서킷 인스펙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 아치 및 신호등 작동 유무 : 트랙, 피트로드, 피트 입·출구, 그리드 등 라인 마킹 상태 : 피트 입·출구 속도 표지판 상태 : 피트 내 소화기 관리 상태 : 서킷 상태(주행 라인, 트랙 노면, 연석), 안전지대, 잔디 관리
--	---

	<p>: 가드레일, 타이어 베리어, 테크프로, 안전펜스 관리 상태</p> <p>: 서킷 내의 광고, 홍보물, 현수막 설치 상태</p> <p>: 서킷 내의 소화기 관리 상태</p> <p>: 각 포스트 상태 및 일련번호 관리</p> <p>3. 감독관은 KARA에 경기 중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3조 경기임원의 조직구성</p> <p>1. 최소 필요 임원</p> <p>경기는 적어도 경기심사위원 3명과 경기위원장 1명을 두고 시간 측정에 의한 결정이 행해지는 경우 1명 이상의 기록위원을 두어야 한다.</p>	<p>제10.3조 경기임원의 조직구성</p> <p>1. 최소 필요 임원</p> <p>경기는 심사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경기위원장, 코스, 안전, 기술, 피트, 기록 등으로 구성된 경기위원회와 대회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장 등으로 경기 임원을 구성한다.</p>
<p>제10.10조 심사위원의 권한</p> <p>...</p> <p>10. 출장정지(실격) 처리를 할 수 있다.</p> <p>...</p>	<p>제10.10조 심사위원의 권한</p> <p>...</p> <p>10. 출장정지(실격) 제외 또는 실격처리를 할 수 있다.</p> <p>...</p>

제1부 3장 대회주최자 등록규정

제4조 신청서류

대회주최자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1 KARA가 정한 소정의 신청서.

제4조 신청서류

대회주최자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단체, 기업, 개인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국제대회는 3개월 전, 국내대회는 2개월 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1 **대회주최자 등록신청서.**

제5조 대회주최자의 승인

5.1 대회주최자의 승인은 KARA 사무국과 이사 5인 이상 심의 후 과반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5.2 등록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 직접 제출한다.

제5조 대회주최자의 승인

5.1 대회주최자의 승인은 KARA 사무국과 이사 5인 이상 심의 후 과반수 동의를 통해 결정한다.

5.2 등록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 직접 제출한다.

5.3 KARA로부터 승인 받은 대회주최자의 소유권을 2019년 1월 1일부터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기존 대회주최자 포함).

5.4 FIA 또는 KARA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경기장에서 경기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제1부 4장 팀 등록규정

제7조 자격의 제한

KARA 사무국은 등록을 신청한 팀의 자격을 심사, KARA가 정한 팀 등록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자격의 제한

7.1 KARA 사무국은 등록을 신청한 팀의 자격을 심사, KARA가 정한 팀 등록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7.2 KARA로부터 승인 받은 영구등록팀의 소유권을 2019년 1월 1일부터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

제1부 5장 선수 등록규정

제2조 선수 라이선스

제2.1조 선수 라이선스의 분류와 유효한 경기

2.1.1 KARA 라이선스의 경기별 참가등급은 KARA 공인 대회주최자로부터 제출 받은 특별규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별도 결정된다.

2.1.2 국제 선수 라이선스는 국제스포츠규정과 국제카트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KARA가 발급한다.

[표-1 라이선스 등급별 취득 점수표]

소재	국내/ 국제	등급	해당 라이선스 취득 가능 점수
선수	국제	A, B	예외-FIA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발급
		C	-
	국내	A	100
		B	70
		C	10

...

2.2.1 선수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자는 국내의 도로교통법에 의한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국의 면허증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제2조 선수 라이선스

제2.1조 선수 라이선스의 분류와 유효한 경기

2.1.1 KARA 라이선스의 경기별 참가등급은 KARA 공인 대회주최자로부터 제출 받은 특별규정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별도 결정된다.

2.1.2 국제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는 국제스포츠규정과 국제카트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KARA가 발급한다.

[표-1 **레이스** 라이선스 등급별 취득 점수표]

소재	국내/ 국제	등급	해당 라이선스 취득 가능 점수
선수	국제	A, B	예외-FIA국제스포츠규정에 의거하여 발급
		C	-
	국내	A	100
		B	70
		C	10
		J	-

...

2.2.1 선수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자는 국내의 도로교통법에 의한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국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소지자이어야 한다. (단, 국내 **Junior** 라이선스는 예외로 한다)

2.2.2 국내 선수 라이선스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라이선스 등급이 변경될 때 마다 점수는 '0'점 처리되고 단계별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

2.2.2.a 국내 C: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2.2.a.i KARA 공인 레이싱 스쿨 수료자 (10점).

2.2.2.a.ii KARA 공인 짐카나 대회에 1회 이상 참가 후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2.2.2 국내 선수 라이선스 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라이선스 등급이 변경될 때 마다 점수는 '0'점 처리되고 단계별 승급을 원칙으로 한다.

2.2.2.a 국내 Junior :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포물러 등 자동차경주를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 출전하는 대회에 한해 KARA가 심의를 통해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규정에 따라 국내 C레이스 라이선스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2.2.2.a.i 국내 카트 A라이선스를 취득한 자

2.2.2.a.ii 만 16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인 자

2.2.2.a.iii 공인 카트 레이싱 팀 추천서를 제출한 자

2.2.2.a.iv KARA 신규드라이버 교육 이수자

2.2.2.a.v 법정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한 자

2.2.2.b 국내 C: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2.2.2.b.i KARA 공인 레이싱 스쿨 수료자 (10점).

2.2.2.b.ii KARA 공인 짐카나 대회에 1회 이상 참가 후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p>자(10점).</p> <p>2.2.2.a.iii KARA 신규 드라이버 라이선스 교육 이수자 (10점).</p> <p>2.2.2.b 국내 B: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p> <p>2.2.2.b.i 표-3 라이선스 승급 점수표를 기준으로 취득 가능 점수 70점을 충족한 자.</p> <p>2.2.2.b.ii 국내 카트 A 라이선스 이상 소지자 중 국내 공인 카트대회에서 상위 3위 이상 입상자.</p> <p>2.2.2.b.iii KARA가 실시한 드라이버 의무 교육 수료자.</p> <p>2.2.2.c 국내 A: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p> <p>2.2.2.c.i 표-3 라이선스 승급 점수표를 기준으로 취득 점수 가능 점수 100점을 충족한 자 중 KARA가 실시한 드라이버 의무 교육 수료자</p> <p>2.2.3 선수 라이선스의 연령 제한은 만 19세 이상으로 한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KARA의 보호자 동의를 작성하여 KARA 사무국에</p>	<p>자(10점).</p> <p>2.2.2.b.iii KARA 신규 드라이버 라이선스 교육 이수자 (10점).</p> <p>2.2.2.b.iv KARA 공인 레이싱 팀 (영구등록팀과 단기등록팀)의 교육을 이수한 자 (서킷 내 스포츠 주행 5타임-10점).</p> <p>2.2.2.c 국내 B: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p> <p>2.2.2.c.i 표-3 라이선스 승급 점수표를 기준으로 취득 가능 점수 70점을 충족한 자.</p> <p>2.2.2.c.ii 국내 카트 A 라이선스 소지자 중 국내 공인 카트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표-3 레이스 라이선스 승급 점수표 참고)</p> <p>2.2.2.c.iii KARA가 실시한 드라이버 의무 교육 수료자.</p> <p>2.2.2.d 국내 A: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p> <p>2.2.2.d.i 표-3 라이선스 승급 점수표를 기준으로 취득 점수 가능 점수 100점을 충족한 자 중 KARA가 실시한 드라이버 의무 교육 수료자</p> <p>2.2.3 선수 라이선스의 연령 제한은 만 19세 이상으로 한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KARA의 법정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KARA 사무국에</p>
--	---

<p>제출하여야 한다.</p> <p>2.2.4 포물러 레이스 라이선스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만 18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포물러 자동차만이 탑승 가능하다.(라이선스에 별도의 표기를 명시)</p> <p>2.2.5 해외 ASN 라이선스 취득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라이선스 사본과 경기경력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 뒤 KARA 사무국의 승인에 따라 국내 라이선스 또는 국제 라이선스의 등급이 결정 된다.</p> <p>제 2.3조 국제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의 신청과 승급</p> <p>2.3.1 국제 C의 신청</p> <p>2.3.1.a 국내 대회 주최자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국제 c라이선스의 신청은 국내 A라이선스 취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p> <p>국외대회 주최자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한다. 심의를 통과한 자는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L'의 드라이버 메디컬 검사 항목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메디컬 검사 결과서를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출하여야 한다.</p> <p>2.2.4 포물러 레이스 라이선스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만 18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포물러 자동차만이 탑승 가능하다.(라이선스에 별도의 표기를 명시)</p> <p>2.2.4 해외 ASN 라이선스 취득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라이선스 사본과 경기경력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 뒤 KARA 사무국의 승인에 따라 국내 라이선스 또는 국제 라이선스의 등급이 결정 된다.</p> <p>제 2.3조 국제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의 신청과 승급</p> <p>2.3.1 국제 C의 신청</p> <p>2.3.1.a 국내 대회 주최자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국제 c라이선스의 신청은 국내 A라이선스 취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p> <p>국외대회 주최자가 개최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한다. 심의를 통과한 자는 '국제스포츠규정 부칙 L'의 드라이버 메디컬 검사 항목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메디컬 검사 결과서를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p> <p>2.3.1.b 국내 Junior 레이스 라이선스 소지자가 포물러 등의 국제 경기 참가시 제한적으로 국제C 레이스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다. (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p>
---	---

2.3.1.b 카트 국제B라이선스 소지자. 예외 조항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L을 따른다.

2.3.1.c 자동차 및 경주차의 연구개발, 국제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 경우 KARA가 별도 심의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2.3.6 국제경기 참가 필요 서류

2.3.6.a 국제경기 참가에 필요한 서류는 '국제선수 라이선스', '메디컬 의료카드', '선수비자' 이며, 국제경기 참가자는 경기 참가 전에 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 서류는 KARA에서 발급한다.

제2.4조 카트 선수 라이선스의 신청

2.4.1 카트 선수 라이선스 신청은 만 7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신청 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나이에 따라 라이선스 신청과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2.4.1.a 카트 국내 D의 신청은 만 7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승급은 만 11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2.4.1.b 카트 국내 C의 신청은 만 11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2.3.1.c 국제카트 B 라이선스 소지자. 예외 조항은 국제스포츠규정 부칙L을 따른다.

2.3.1.d 자동차 및 경주차의 연구개발, 국제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 경우 KARA가 별도 심의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2.3.6 국제대회 참가 필요 서류

2.3.6.a 국제대회 참가에 필요한 서류는 '국제선수 라이선스', '메디컬 카드', '선수비자' 이다. 모든 서류는 KARA에서 발급한다.

2.3.6.b 참가 대회 개최 2주전까지 필요서류를 신청할 때 참가 대회 규정을 KARA로 전달한다.

2.3.6.c 대회종료 2주 이내 참가 기록을 제출한다.
(이메일 접수, kara@kara.or.kr)

2.3.6.d 미성년자는 '법정보호자 동의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카트 선수 라이선스의 신청

2.4.1 카트 선수 라이선스 신청은 만 7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신청 시 미성년자는 법정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나이에 따라 라이선스 신청과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2.4.1.a 카트 국내 D의 신청은 만 7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승급은 만 11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2.4.1.b 카트 국내 C의 신청은 만 11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p>2.4.1.c 국내 레이스 C 라이선스 이상 소지자는 국내 카트 C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p> <p>2.4.1.d 국내 레이스 B 라이선스 이상(국제 라이선스 포함) 소지자는 국내 카트 A 라이선스 이하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2.5조 드리프트 선수 라이선스 신청</p> <p>2.5.1 드리프트 선수 라이선스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p> <p>2.5.1.a 드리프트 국내 D4의 신청</p> <p>드리프트 국내 D4 신규 신청의 경우 KARA에 등록된 드리프트팀, 드리프트 스쿨에서 발급한 이론 교육 수료증과 라이선스 신청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다.</p> <p>2.5.1.b 드리프트 국내 D3의 신청</p> <p>드리프트 국내 D3 신규 신청의 경우 KARA에 등록된 드리프트팀, 드리프트 스쿨에서 발급한 실습 교육 수료증과 라이선스 신청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다.</p> <p>2.5.2 승급</p> <p>2.5.2.a 드리프트 국내 D3에서 드리프트 국내 D2로의 신청</p> <p>2.5.2.a.i 드리프트 국내 D3 소지자로 신청 전 24개월 내에 KARA가 공인한 경기(드리프트 국내 D3 소지 경기)에서 5회 이상 출전하여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 또는 2회 이상 입상한 자.</p>	<p>제2.5조 드리프트 선수 라이선스 신청</p> <p>2.5.1 드리프트 선수 라이선스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p> <p>2.5.1.a 드리프트 국내 D4의 신청</p> <p>드리프트 국내 D4 신규 신청의 경우 KARA에 등록된 드리프트 팀, 드리프트 스쿨에서 발급한 이론 교육 수료증과 라이선스 신청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다.</p> <p>2.5.1.b 드리프트 국내 D3의 신청</p> <p>드리프트 국내 D3 신규 신청의 경우 KARA에 등록된 드리프트팀, 드리프트 스쿨에서 발급한 실습 교육 수료증과 라이선스 신청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한다.</p> <p>2.5.2 승급</p> <p>2.5.2.a 드리프트 국내 D3에서 드리프트 국내 D2로의 신청</p> <p>2.5.2.a.i 드리프트 국내 D3 소지자로 라이선스 신청 전 24개월 내에 KARA가 공인한 경기(D3 라이선스 요구)에 참가하여 해당 대회 클래스의 본선 상위 50%의 공식 기록을 인정받은 자.</p> <p>본선 상위 50% 정의는 아래의 예와 같다.</p>

2.5.2.b 드리프트 국내 D2에서 드리프트 국내 D1로의 신청

2.5.2.b.i 드리프트 국내 D2 소지자로 신청 전 12개월 내에 KARA 공인한 경기(드리프트 국내 D2 소지 경기)에서 시리즈 입상자.

2.5.2.b.ii 드리프트 국내 D2 소지자로 신청 전 12개월 내에 KARA 공인한 경기(드리프트 국내 D2 소지 경기)에서 5회 우승자.

2.5.3 드리프트 국제 라이선스의 신청

2.5.3.i 드리프트 국제 라이선스는 FIA 규정에 준한다.

제2.6조 국제 R 선수 라이선스

국제 R 선수 라이선스는 국내 A의 소지자 중 국제 로드 경기(랠리, 크로스컨트리랠리, 힐 클라임 등) 출전시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다.

드리프트 대회는 해당 대회규정과 참가자 수에 따라 본선 진출이 16강, 8강, 4강 등 상이하게 운영되므로 16강으로 본선이 진행되는 경기에서 8강진출자가 상위 50%의 공식기록을 인정받게 된다. 8강으로 진행되는 경기에서는 4강 진출자가 공식기록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한다.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2.5.2.b 드리프트 국내 D2에서 드리프트 국내 D1로의 신청

2.5.2.b.i 드리프트 국내 D2 소지자로 신청 전 36개월 내에 KARA 공인한 대회(드리프트 국내 D2 소지 경기)에서 시리즈 3위 이상 입상자.

2.5.2.b.ii 드리프트 국내 D2 소지자로 신청 전 36개월 내에 KARA 공인대회(드리프트 국내 D2 소지 경기)에서 5회 우승자.

2.5.3 드리프트 국제 라이선스의 신청

2.5.3.i 드리프트 국제 라이선스는 FIA 규정에 준한다.

제2.6조 국제 R 선수 라이선스

국제 R 선수 라이선스는 국내 레이스 A 라이선스 소지자 중 국제 로드 경기(랠리, 크로스컨트리랠리, 힐 클라임 등) 출전시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제1부 6장 오피셜 등록규정

제1.2조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KARA의 심판원 라이선스 등급은 아래와 같다.

구분	등급	직위
심사위원	A+	심사위원
위원장	A1	위원장급
	A2	
선임	B1	선임급
	B2	
요원	C1	일반요원
	C2 / D	
심사위원	S+	심사위원
	S1	
	S2	
요원	E	소방, 의료, 기타 특수직

제1.2조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KARA의 **국내**심판원 라이선스 등급은 아래와 같다.

구분	등급	직위
심사위원	A+	심사위원
위원장	A1	위원장급
	A2	
선임	B1	선임급
	B2	
요원	C1	일반요원
	C2 / D	
심사위원	S+	심사위원
	S1	
	S2	
요원	E	소방, 의료, 기타 특수직

제1.3조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

제1.3조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1.3.3 만 19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보호자 동의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

제1.3조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1.3.3 만 19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법정보호자 동의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자격

1.4.1 국내 C2, D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4.1.a KARA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 후 온라인 시험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

제1.4조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자격

1.4.1 국내 오피셜 라이선스 신청 자격

1.4.1.a 국내 C2, D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4.1.a.i KARA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 후 온라인 시험 결과가 60점 이상인

<p>1.4.1.b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일반교육 수료자 중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p> <p>1.4.1.c 경기 현장에서 A1 또는 A2 오피셜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오피셜 교육을 받은자. 국내 D 라이선스는 공인경기 2회에 한해 참가할 수 있으며, 취득 후 36개월이내 C2 라이선스 신청 시 별도의 절차 없이 C2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하다.</p>	<p>자.</p> <p>1.4.1.a.ii KARA가 실시하거나 인정한 신규 또는 일반교육 수료자 중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p> <p>1.4.1.a.iii 경기 현장에서 A1 또는 A2 오피셜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오피셜 교육을 받은자. 국내 D 라이선스는 공인경기 2회에 한해 참가할 수 있으며, 취득 후 36개월이내 C2 라이선스 신청 시 별도의 절차 없이 C2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하다.</p> <p>1.4.1.a.iv C2이상의 오피셜 라이선스 소지자는 D등급을 신청 할 수 없다.</p> <p>1.4.1.b 국내 S2 국내 경기 주최자, 조직위원회 혹은 공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 KARA의 심사위원 수련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p> <p>1.4.1.c 국내 E 해당 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직 종사자 중 KARA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자.</p>
<p>제1.5조 오피셜 라이선스 승급</p> <p>1.5.1 국내 A1에서 A+로의 신청</p> <p>1.5.1.a A1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심사위원 수련과정(옹저버)을 이수한 자 중 KARA심사세미나 1회 이상 의무 참석하여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p>	<p>제1.5조 오피셜 라이선스 승급</p> <p>1.5.1 국내 A1에서 A+로의 신청</p> <p>1.5.1.a A1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심사위원 수련과정(옹저버)을 이수한 자 중 KARA심사세미나 1회 이상 의무 참석하여 KARA 및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p>

<p>1.5.2 국내 A2에서 A1으로의 신청</p> <p>1.5.2.a A2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24개월 이내에 10회 이상의 공인경기에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파트 오피셜로 활동한 자, 또는 24개월 이내에 7회 이상의 공인경기에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파트 오피셜로 KARA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자.</p> <p>서로 다른 파트 경험을 위하여 옹저버로서의 참가도 경력으로 인정된다.</p> <p>이 경우 경기위원장의 서명이 포함된 옹저버 활동 확인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참여에 대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1.5.2 국내 A2에서 A1으로의 신청</p> <p>1.5.2.a A2 오피셜 라이선스 취득 후 24개월 이내에 10회 이상의 공인경기에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파트 오피셜로 활동한 자, 또는 24개월 이내에 7회 이상의 공인경기에서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파트 오피셜로 KARA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자. 서로 다른 파트 경험을 위하여 옹저버로서의 참가도 경력으로 인정된다.</p> <p>이 경우 경기위원장의 서명이 포함된 옹저버 활동 확인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참여에 대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1.5.3 국내 B1에서 A2로의 신청</p> <p>B1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KARA의 승급시험을 통과한 자.</p> <p>1.5.3.a 36개월 이내에 5회 이상의 공인 경기에서 2개 이상의 파트에 참가한 자. 단, 1개의 파트 참가는 최소 2회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기술과 기록 파트는 이 기준에서 예외로 한다.</p> <p>서로 다른 파트 경험을 위하여 옹저버로서의 참가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경기위원장의 서명이 포함된 옹저버 활동 확인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참여에 대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A2 라이선스 신청은 B1 라이선스 취득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p>	<p>1.5.3 국내 B1에서 A2로의 신청</p> <p>B1 라이선스 취득 후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KARA의 승급시험을 통과한 자.</p> <p>1.5.3.a 36개월 이내에 5회 이상의 공인 경기에서 2개 이상의 파트에 참가한 자. 단, 1개의 파트 참가는 최소 2회 이상 활동하여야 한다. 하며 기술과 기록 파트는 이 기준에서 예외로 한다.</p> <p>서로 다른 파트 경험을 위하여 옹저버로서의 참가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경기위원장의 서명이 포함된 옹저버 활동 확인서를 KARA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참여에 대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A2 라이선스 신청은 B1 라이선스 취득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p>
<p>제1.6조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유지</p>	<p>제1.6조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유지</p>

<p>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유지 조건 미충족 시 1단계 라이선스 강등이 이루어진다.</p> <p>단, A2, A1라이선스는 등급 유지조건 미충족 시 관련 위원회 심의로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격 유지 또는 1단계 라이선스 강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p> <p>1.6.1 국내 A2, A1 매년 라이선스 갱신과 36개월 이내 공인경기 3회 이상 참가</p> <p>1.6.2 국내 B2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경기 1회 이상 참가</p> <p>1.6.3 국내 B1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경기 1회 이상 참가</p> <p>1.6.4 국내 C1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경기 1회 이상 참가</p>	<p>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유지 조건 미충족 시 1단계 라이선스 강등이 이루어진다.</p> <p>단, A2, A1라이선스는 등급 유지조건 미충족 시 관련 위원회 심의로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격 유지 또는 1단계 라이선스 강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p> <p>오피셜은 KARA가 주최하는 교육에 참여할 것을 권장 하며 상황에 따라 의무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p> <p>1.6.1 국내 A2, A1 매년 라이선스 갱신과 36개월 이내 공인경기대회 3회 이상 참가</p> <p>1.6.2 국내 B2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경기대회 1회 이상 참가</p> <p>1.6.3 국내 B1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경기대회 1회 이상 참가</p> <p>1.6.4 국내 C1 36개월 이내 갱신과 공인경기대회 1회 이상 참가</p> <p>1.6.5 국내 C2 24개월 이내에 공인경기 1회 이상 참가</p>
<p>제2조 규정의 적용 및 시행 제2.1조 벌칙</p>	<p>제2조 규정의 적용 및 시행 제2.1조 벌칙</p>

2.1.1.b 등급 강등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의 라이선스 등급은 1단계 하향된다. 이 벌칙은 Non-Graded 라이선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1.1.b 등급 강등

이 처분을 받은 오피셜의 라이선스 등급은 1단계 하향된다. 이 벌칙은 ~~Non-Graded~~ 심사위원 라이선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부 7장 국내자동차경기 공인 가이드 라인 대회 등록규정

<p>1. 목적 국내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경기의 신청과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세부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1. 목적 국내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대회의 신청과 등록 및 공인을 위한 제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세부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2. 경기 총괄 2.1 KARA(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는 국내 자동차 경기 총괄, 경기 등급 표시, 명칭 사용과 경기 참가 자격 및 경기결과의 인증을 총괄한다. (국내 스포츠규정 참조) 2.2 FIA(국제자동차연맹)는 국제 자동차 경기 총괄, 경기 등급 표시, 명칭 사용과 경기 참가 자격 및 경기결과 인증에 대하여 총괄한다. (국제 스포츠규정 참조)</p>	<p>2. 경기 총괄 2.1 KARA(Korea Automobile Racing Association)는 국내 자동차 경기 총괄, 경기 등급 표시, 명칭 사용과 경기 참가 자격 및 경기결과의 인증을 총괄한다. (국내 스포츠규정 참조) 2.2 FIA(국제자동차연맹)는 국제 자동차 경기 총괄, 경기 등급 표시, 명칭 사용과 경기 참가 자격 및 경기결과 인증에 대하여 총괄한다. (국제 스포츠규정 참조)</p>
<p>4. 경기의 등급 4.1 국제 경기 : 국제 스포츠규칙(ISC) 에 정의된 경기 4.2 국내 경기 : KARA 국내 스포츠규정에 정의된 경기</p>	<p>4. 경기의 등급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4.1 국제 경기 대회: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2조 13항에 정의된 경기 대회 4.2 국내 경기 대회: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2조 14항에 정의된 경기 대회</p>
<p>제6조 경기 공인 FIA의 ISC(International Sporting Code)와 KARA 국내스포츠 규정에 자동차 경기로의 정의되는 경기는 모두 KARA의 공인 허가를 필요로 한다.</p>	<p>제6조 경기 대회 공인 FIA의 ISC(International Sporting Code)와 KARA 국내스포츠 규정에 자동차 경기로의 정의되는 경기는 모두 KARA의 공인 허가를 필요로 한다. 6.1 대회(Event)</p>

주최자 A, B에 의해 개최되는 단일 대회 또는 시리즈 대회로서 동일 주최자가 운영하는 메인 클래스 또는 하위 클래스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주최자는 대회 공인신청서에 직접 관리하는 모든 클래스의 주요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대회 기록은 주최자가 개최하는 대회 명칭 안에 하위 경기까지 협회 전산시스템(KSM)에 관리된다.

6.2 챔피언십 (Championship)

챔피언십은 시리즈 경기이거나 단독 경기일 수 있다. 오직 FIA만이 국제 관련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으며, KARA만이 국내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및 시리즈를 인가할 수 있다.

국내 챔피언십 대회는 최상위 클래스의 평균 엔트리 숫자가 6대 이상 가능한 규모여야 한다. 만일 평균 엔트리 숫자가 6대 미만일 경우 챔피언십 대회 자격 유지 여부를 위해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6.3 서포트 레이스 (Support Race)

주최자 A, B 또는 C에 의해 개최되는 단일 클래스의 경기로서 메인 대회의 주최자와는 별도로 협회에 등록된 주최자가 경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서포트레이스 주최자는 메인 대회의 주최자가 구성한 조직(경기위원회,

	<p>심사위원회, 사무국)을 협의 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메인 대회 주최자와 협의 하에 이용할 수 있으며 별개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경기위원회는 메인 대회의 조직을 활용하여야 하며, 별도의 레이스 디렉터를 두어 경기위원장과 협의하여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서포트레이스의 기록은 메인대회의 기록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협회 전산시스템(KSM)에 등록되어 관리된다.</p> <p>6.4 지역 대회 또는 경기(Zone Event/Competition) FIA가 인정하는 Zone에 속해 있거나 해당 ASN이 인정한 라이선스 보유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말한다. * Zone: FIA가 지정/규정한 국가별 지역 구분을 뜻하며 KARA는 ASIA Zone에 속한다</p> <p>6.5 국제대회 FIA 국제스포츠규정(FIA ISC)과 부칙 안에서 FIA가 결정한 요건에 따른 기준(신청양식 제출)을 충족하는 대회를 말하며, Zone에 상관없이 국제 라이선스 보유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말한다.</p>
<p>7. 자동차 경기 공인 범위 7.1 경기가 개최되는 경기장에 대한 안전시설 검수 7.2 경기 참가자 및 드라이버에 대한 라이선스 인증 7.3 경기 참가자 및 드라이버의 공식 기록 인증 7.4 경기 운영 오피셜 라이선스 인증 7.5 경기 운영 방안 검수 7.6 경기용 차량 및 선수 안전 장비 호몰로게이션 인증</p>	<p>7. 자동차 경가 대회 공인 범위 7.1 대회 운영 및 기술 규정의 승인 7.2 대회 주최자, 팀, 드라이버 그리고 대회운영 심판원에 대한 인증 7.3 대회용 차량 및 선수 안전 장비의 인증 7.4 대회장의 안전시설 및 안전 대책에 대한 검수 7.5 대회 참가자 및 드라이버의 공식 기록 인증</p>

<p>8. 공인 경기의 혜택</p> <p>8.1 FIA의 ISC와 KARA 국내 스포츠규정에 의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다.</p> <p>8.2 경기 기록을 영구히 인정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타 ASN에서 기록이 인정된다.</p> <p>8.3 KARA 파견 심사 및 감독관 파견으로 지속적인 경기 운영 평가를 통해 경기의 질 향상</p> <p>8.4 분쟁 및 의견 충돌 시 KARA는 별도위원회가 조직·구성되어 분쟁을 조정한다.</p> <p>8.5 KARA는 선수, 팀, 회원 단체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선다.</p>	<p>8. 공인 대회의 혜택</p> <p>8.1 FIA의 ISC와 KARA 국내 스포츠규정에 의해 공정하고 안전한 대회 운영을 할 수 있다.</p> <p>8.2 대회 기록을 영구히 인정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타 ASN에서 기록이 인정된다.</p> <p>8.3 KARA 파견 심사 및 감독관 파견으로 지속적인 대회 운영 평가를 통해 대회의 질 향상 KARA 공인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와 감독관의 대회 운영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대회 운영가능</p> <p>8.4 분쟁 및 의견 충돌 시 KARA는 별도위원회가 조직·구성되어 분쟁을 조정한다. KARA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p> <p>8.5 KARA는 선수, 팀, 회원 단체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선다. KARA에 의해 선수, 팀, 회원 단체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p>
<p>10. 경기 주최자의 의무</p> <p>10.1 경기 운영을 책임질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p> <p>10.2 조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회사무국, 심사위원회, 경기위원회로 구성된다.</p> <p>10.2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FIA 규정과 KARA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0.3 경기 중 경기 운영에 대한 책임은 주최자 또는 조직위원회에 있다.</p> <p>10.4 경기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으며, KARA에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p> <p>10.5 경기 안전 대책 강구하고 안전시설을 점검해야 한다.</p> <p>10.6 만일의 응급 사고를 대비하여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p> <p>10.7 경기 참가자, 오피셜, 관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p> <p>10.8 경기 참가자 접수 시 KARA 라이선스 확인 후 참가 접수를 받아야 한</p>	<p>10. 대회 주최자의 의무</p> <p>10.1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FIA 규정과 KARA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0.2 대회 운영을 책임질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p> <p>10.3 조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회사무국, 심사위원회, 경기위원회로 구성한다.</p> <p>10.4 대회 운영에 대한 책임은 주최자 또는 조직위원회에 있다.</p> <p>10.5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만일의 응급 사고를 대비하여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p> <p>10.6 대회 참가자, 오피셜, 관중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p> <p>10.7 주최자는 대회 기록 발표시 KARA의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협회의 로고를 표시하여야 한다.</p>

<p>다.</p> <p>10.9 경기 주최자는 경기가 진행되는 서킷이나 코스의 일부 혹은 전체가 공공도로 또는 일반도로를 포함하고 있을 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0.8 대회의 승인을 위한 제반 서류와 공인비를 지정된 기간에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0.9 주최자는 대회가 진행되는 서킷이나 코스의 일부 혹은 전체가 공공도로 또는 일반도로를 포함하고 있을 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0.10 대회 주최자는 대회장내에 협회 직원과 감독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을 배정하여야 하며 대회에서 생성되는 제반 문서를 당일 대회장 내 협회 사무실에 전달하여야 한다.</p> <p>10.11 대회 주최자는 대회의 승인을 위하여 공인비를 납부하고 대회에서 수집된 벌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2. 경기 공인 신청</p> <p>12.1 경기 주최자는 경기 시리즈 등록과 공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2.2 경기 시리즈 등록은 당해 연도 전체 일정 공식화를 위한 목적이며 매 경기마다 공인신청서를 제출하여 KARA의 승인 하에 경기 공인접수가 완료된다.</p> <p>12.3 경기 주최자는 경기 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접수 기한을 지켜 제출하여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국내 경기 공인 신청</p>	<p>12. 경가 대회 공인 신청</p> <p>12.1 경가 대회주최자는 경기 시리즈 등록과 매 대회마다 공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2.2 경기 시리즈 등록은 당해 연도 전체 일정 공식화를 위한 목적이며 매 경기마다 공인신청서를 제출하여 KARA의 최종 확인 하에 경기 공인접수가 완료된다.</p> <p>12.3 메인 대회 시리즈 또는 특정 라운드에서 서포트 레이스가 함께 개최될 경우 '서포트 레이스 대회주최자'는 '대회주최자 등록', '대회 시리즈 등록', 또는 '대회공인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하여야 한다.</p> <p>12.3 12.4 경가대회 주최자는 경기 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접수 기한을 지켜 제출하여야 한다.</p> <p><input type="checkbox"/> 국내 대회 공인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접수기한</p>

제출 서류	접수 기한
① 시리즈 등록 신청서 [별지1. 양식 참조]	연 초 또는 경기 2개월 전 까지
② 경기 규정(스포츠, 기술)	
③ 공인허가신청서 [별지2. 양식 참조]	대회 개최 5일 전 까지
④ 대회특별규칙서	
⑤ 대회 공인비	
⑥ 경기 조직도	
⑦ 드라이버 명단	대회 개최 3일 전 까지
⑧ 오피셜 명단	
⑨ 보험 가입 증서(드라이버, 오피셜, 경기참가자, 관중)	대회 개최 2일 전 까지
⑩ 응급 대책(Medical Plan) [별지3. 예시 참조]	
⑪ 경기 타임 테이블	대회 개최 3일 전 까지
⑫ 경기장 사용 승인서	KARA 요청 시 제출

□ 국제 경기 공인 신청

제출 서류	접수 기한
① 국제 경기 주최자 대회주최자 정보	연 초 또는 경기 3개월 전 까지
② 국제 경기 주최자 경기 승인서 (국제 경기 대회주최자 발급)	
③ 해당 국제 경기 대회 특별규칙서(스포츠, 기술) 국문 및 영문	대회 개최 2개월 전 까지
④ 대회 공인비	대회 3주 전 까지
⑤ 경기 조직도	대회 개최 7일 전 까지
⑥ 드라이버 명단 (해당 ASN의 국제 라이선스,	

제출 서류	접수 기한
1) 시리즈 등록 신청서 [별지1. 양식 참조]	대회 공식스케줄 시 작일 2개월 전 까지
2) 대회 규정 (스포츠, 기술)	
3) 대회 공인비	대회 공식스케줄 시 작일 14일 전 까지
4) 대회 공인허가 신청서 [별지2. 양식 참조]	대회 공식스케줄 시 작일 5일 전 까지
5) 대회 특별규정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	
6) 대회 조직도	
7) 운영계획안 (공간구성, 피트배치도, 검차계획 등)	
8) 경기 타임 테이블 (잠정)	
9) 드라이버 명단 (KARA 지정 양식 제출)	대회 공식스케줄 시 작일 3일 전 까지
10) 오피셜 명단 (KARA 지정 양식 제출)	
11) 보험 가입 증서 (드라이버, 오피셜, 대회참가자, 관중)	
12) 응급 대책(Risk Management Plan)	

□ 국제 대회 공인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접수 기한

제출 서류	접수 기한
1) 국제 대회 주최자 정보	연 초 또는 대회 공식스케 줄 시작일 3개 월 전 까지
2) 국제 대회 주최자 경기 승인서 (대회주최자 발급)	
3) 국제 대회 스포츠/기술 규정 ① 대회 규정 및 특별규칙 (국문/영문 각1부) ② FIA International Series – Sporting Regulations form [*양식별도문의] ③ FIA International Series – Technical Regulations form [*양식별도문의]	
4) FIA Commercial brand authorization form [*양식별도문의]	

경기 참가 비자레터, 메디컬 증명서)		5) 대회 로고	
⑦ 오피셜 명단		6) 대회 공인비	대회 공식스케 줄 시작일 3주 전 까지
⑧ 보험 가입 증서(드라이버, 오피셜, 경기참가자, 관중)		7) 대회 조직도	
⑨ 응급 대책(Medical Plan) [별지3. 예시 참조]		8) 운영계획안	
⑩ 경기 스케줄		9) 대회 타임테이블	
⑪ 경기장 사용 승인서	KARA 요청 시 제출	10) 드라이버 명단(KARA 지정 양식) (국제 라이선스 사본, 대회 참가 비자레터, 메디컬 증명서)	대회 공식스케 줄 시작일 7일 전 까지
		11) 오피셜 명단(KARA 지정 양식)	
		12) 보험 가입 증서 (드라이버, 오피셜, 대회참가자, 관중)	
		13) 응급 대책(Risk Management Plan)	
□ Asia-Zone 대회(Competition/Event) 공인 신청			
제출 서류		접수 기한	
1) 대회 주최자 정보		연 초 또는 대회 3개월 전 까지	
2) 대회 주최자 경기 승인서 (대회주최자 발급)			
3) 대회 스포츠/기술 규정 ① 대회 규정 및 특별규칙 (국문/영문 각1부) ② FIA – Sporting Regulations form [*양식별도문의] ③ FIA – Technical Regulations form [*양식별도문의]			
4) FIA Commercial brand authorization form [*양식별도문의]			
5) 대회 로고			
6) 대회 공인비		대회 3주 전 까지	
7) 대회 조직도			

<p>12.4 경기 후 주최자의 제출 서류 경기 주최자는 경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68 751 994 1182"> <thead> <tr> <th>경기 진행 관련 서류</th> <th>접수 및 기한</th> </tr> </thead> <tbody> <tr> <td>최종 경기 결과 기록(excel 파일)</td> <td rowspan="5">경기 종료 후 3일 이내 까지</td> </tr> <tr> <td>관제 일지</td> </tr> <tr> <td>벌칙 통보서</td> </tr> <tr> <td>포스트 보고서</td> </tr> <tr> <td>검차 보고서</td> </tr> <tr> <td>심사 보고서</td> <td rowspan="3">경기 종료 후 5일 이내 까지</td> </tr> <tr> <td>기타 보고서</td> </tr> <tr> <td>벌금(국민은행 59860 10408 1965, 대한자동차경주협회)</td> </tr> </tbody> </table>	경기 진행 관련 서류	접수 및 기한	최종 경기 결과 기록(excel 파일)	경기 종료 후 3일 이내 까지	관제 일지	벌칙 통보서	포스트 보고서	검차 보고서	심사 보고서	경기 종료 후 5일 이내 까지	기타 보고서	벌금(국민은행 59860 10408 1965, 대한자동차경주협회)	<p>8) 운영계획안</p> <p>9) 대회 타임테이블</p> <p>10) 드라이버 명단 (KARA 지정 양식) (국제 라이선스 사본, 대회 참가 비자레터, 메디컬 증명서)</p> <p>11) 오피셜 명단 (KARA 지정 양식)</p> <p>12) 보험 가입 증서 (드라이버, 오피셜, 대회참가자, 관중)</p> <p>13) 응급 대책(Risk Management Plan)</p>	<p>대회 7일 전 까지</p>
경기 진행 관련 서류	접수 및 기한													
최종 경기 결과 기록(excel 파일)	경기 종료 후 3일 이내 까지													
관제 일지														
벌칙 통보서														
포스트 보고서														
검차 보고서														
심사 보고서	경기 종료 후 5일 이내 까지													
기타 보고서														
벌금(국민은행 59860 10408 1965, 대한자동차경주협회)														
<p>13. 모터스포츠 캘린더 등록 ...</p> <p>13.3 캘린더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국내 각 대회 주최자가 개최하는 대회</p>	<p>12.4 대회 후 주최자의 제출 서류 대회주최자는 대회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131 743 1957 1174"> <thead> <tr> <th>대회 진행 관련 서류</th> <th>접수 및 기한</th> </tr> </thead> <tbody> <tr> <td>최종 경기 결과 기록(excel, 파일)</td> <td rowspan="5">경기 종료 후 3일 이내 까지</td> </tr> <tr> <td>관제 일지</td> </tr> <tr> <td>벌칙 통보서</td> </tr> <tr> <td>포스트 보고서</td> </tr> <tr> <td>검차 보고서</td> </tr> <tr> <td>심사 보고서</td> <td rowspan="3">경기 종료 후 5일 이내 까지</td> </tr> <tr> <td>기타 보고서</td> </tr> <tr> <td>벌금*</td> </tr> </tbody> </table> <p>*벌금 납부 : 국민은행 59860 10408 1965, 대한자동차경주협회</p>	대회 진행 관련 서류	접수 및 기한	최종 경기 결과 기록(excel, 파일)	경기 종료 후 3일 이내 까지	관제 일지	벌칙 통보서	포스트 보고서	검차 보고서	심사 보고서	경기 종료 후 5일 이내 까지	기타 보고서	벌금*	<p>13. 모터스포츠 캘린더 등록 ...</p> <p>13.3 캘린더 일정 및 장소 변경 시 국내 각 대회 주최자가 개최하는 대회</p>
대회 진행 관련 서류	접수 및 기한													
최종 경기 결과 기록(excel, 파일)	경기 종료 후 3일 이내 까지													
관제 일지														
벌칙 통보서														
포스트 보고서														
검차 보고서														
심사 보고서	경기 종료 후 5일 이내 까지													
기타 보고서														
벌금*														

<p>일정, 장소, 클래스, 주최자, 대회명칭 등의 변경은 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KARA에 신청을 한다.</p>	<p>일정, 장소, 클래스, 주최자, 대회명칭 등의 변경은 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KARA에 신청을 한다.</p>
<p>14. 공인 인증료 경기를 주최하고자 대회주최자는 경기 공인에 의해서 KARA가 정한 대회공인비를 경기 공인 허가신청서와 함께 KARA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4.1 국내 경기 : 경기 개최 14일 전까지 14.2 국제 경기 : 경기 개최 3주 (21일) 전까지</p>	<p>14. 대회 공인비 대회를 주최하는 경기를 주최하고자 대회주최자는 경기 공인에 의해서 KARA가 정한 대회공인비를 경기 대회공인 허가신청서와 함께 KARA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4.1 국내 경기 : 경기 개최 14일 전까지 14.2 국제 경기 : 경기 개최 3주 (21일) 전까지</p>
<p>16. 대회 규정 16.2 FIA 는 전세계 모든 모터스포츠 대회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규칙으로 '국제스포츠규칙'(ISC International Sporting Code)을 정하여 중요 개념과 용어 방식, 조직의 구성 등의 내용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주최자는 '국제스포츠규칙'을 기반으로 KARA 가 제정한 '스포츠규정'을 준수하여 대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아래의 그림으로 간단히 정리하였다.</p> <p>...</p> <p>16.5 아래 표는 국제 스포츠 규칙에서부터 공식통지까지 각 규정의 제정 및 변경의 주체와 해당 규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p>	<p>16. 대회 규정 16.2 FIA 는 전세계 모든 모터스포츠 대회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규칙으로 '국제스포츠규칙'(ISC International Sporting Code)을 정하여 중요 개념과 용어 방식, 조직의 구성 등의 내용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주최자는 '국제스포츠규칙'을 기반으로 KARA 가 제정한 '스포츠규정'을 준수하여 대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아래의 그림으로 도식화 하였다. 간단히 정리하였다.</p> <p>...</p> <p>16.5 아래 표는 국제 스포츠 규칙에서부터 공식통지까지 각 규정의 제정 및 변경의 주체와 해당 규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표로 나타내었다. 정리하였다.</p>
<p>20. 대회 취소 대회주최자에 대한 제재 KARA로부터 공인 받은 공인 대회의 주최자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대회 개최를 포기할 경우 해당 대회 주최자는 당해 연도 대회주최 자격은 물론 차기 연도 대회 주최자 자격 또한 상실할 수도 있다.</p>	<p>20. 대회 취소 대회주최자에 대한 제재 KARA로부터 공인 받은 공인 대회의 주최자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대회 개최를 포기할 경우 해당 대회 주최자는 당해 연도 대회주최 자격은 물론 차기 연도 대회 주최자 자격 또한 상실할 수도 있다.</p>

<p>27. 공인경기의 심판원(오피셜) 및 감독관</p> <p>27.1 공인경기 운영은 KARA의 심판원 라이선스를 소지한 오피셜 및 마셜만이 운영할 수 있다. 위반 시 대회주최자에게 벌칙이 부여된다.</p> <p>27.2 KARA는 공인된 경기에 1인 이상의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p> <p>27.3 팀 관계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피셜은 해당팀이 참가하는 대회에 레이스디렉터, 심사위원, 경기위원장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p>	<p>27. 공인경기의 심판원(오피셜) 및 감독관</p> <p>27.1 공인경기 운영은 KARA의 심판원 라이선스를 소지한 오피셜 및 마셜 자만이 운영할 수 있다. 위반 시 대회주최자에게 벌칙이 부여된다.</p> <p>27.2 KARA는 공인된 경기에 1인 이상의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p> <p>27.3 팀 관계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피셜은 해당팀이 참가하는 대회에 레이스디렉터, 심사위원, 경기위원장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p>
<p>28. 경기의 심사</p> <p>공인경기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2명의 경기 심사위원과 KARA에서 파견하는 다음과 같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있어야 한다.</p> <p>28.1 심사위원의 자격은 KARA에 심판원 A+ 혹은 S로 등록된 자.</p> <p>28.2 심판원 등록자로서 KARA가 특별히 인정한 자.</p> <p>28.3 KARA가 심판원으로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p> <p>28.4 경기 주최자는 공인 경기에 한하여 KARA에 1인 이상의 KARA 심사위</p>	<p>28. 경기의 심사</p> <p>공인경기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2명의 경기 심사위원과 KARA에서 파견하는 다음과 같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있어야 한다.</p> <p>공인경기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3명 이상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KARA는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대회주최자는 KARA에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p> <p>28.1 심사위원의 자격은 KARA에 심판원 A+ 혹은 S등급으로 등록된 자.</p> <p>28.2 FIA 또는 타 ASN 심판원 등록자로서 KARA가 특별히 인정한 자.</p> <p>28.3 KARA가 심판원으로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 심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은 제2장 국내스포츠규정 제10.9조, 제10.10조를 따른다.</p> <p>28.4 경기 주최자는 공인 경기에 한하여 KARA에 1인 이상의 KARA 심사위</p>

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8.5 심사위원회의 책임

- ① 국제 및 국내자동차경기 규정집과 대회 특별규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② 공식 스케줄과 참가 엔트리를 확인하고 드라이버브리핑에 참석해야 하며, 선수들의 메디컬 체크여부와 이전 경기에서의 페널티, 특이사항 등을 점검한다.
- ③ 공식 스케줄 시작 전 트랙의 상태와 의사, 앰블런스, 소화기 등의 배치 여부와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적정 인원의 오피셜과 구난 차량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킷 인스펙션을 실시한다.
- ④ 상기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경기위원장에게 공식 스케줄의 시작을 지시한다.
- ⑤ 심사위원은 공식연습, 공식예선, 결승레이스가 개최될 때 항상 심사위원실에 있어야 하며, 경기위원장 또는 레이스 디렉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28.6 심사위원회의 권한

- ① 심사위원회는 국제스포츠규정, 본 규정, 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의 시행에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8.5 심사위원회의 책임~~

- ~~① 국제 및 국내자동차경기 규정집과 대회 특별규칙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② 공식 스케줄과 참가 엔트리를 확인하고 드라이버브리핑에 참석해야 하며, 선수들의 메디컬 체크여부와 이전 경기에서의 페널티, 특이사항 등을 점검한다.~~
- ~~③ 공식 스케줄 시작 전 트랙의 상태와 의사, 앰블런스, 소화기 등의 배치 여부와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적정 인원의 오피셜과 구난 차량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킷 인스펙션을 실시한다.~~
- ~~④ 상기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경기위원장에게 공식 스케줄의 시작을 지시한다.~~
- ~~⑤ 심사위원은 공식연습, 공식예선, 결승레이스가 개최될 때 항상 심사위원실에 있어야 하며, 경기위원장 또는 레이스 디렉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

~~28.6 심사위원회의 권한~~

- ~~① 심사위원회는 국제스포츠규정, 본 규정, 특별규정, 공식 프로그램의 시행에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 ② 대회특별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히트의 구성이나 경기 주회수를 변경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순위의 변경 또는 출장 정지(실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된다.
- ④ 경기위원장이 위험하다고 보고한 차량이나 선수를 경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참가 자격이 없거나 부당, 부정 행위를 한 팀 또는 선수를 한 경기 이상 제외시킬 수 있다.
- ⑤ 정당한 오피셜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코스 또는 일정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위원장이나 주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스타트라인, 결승선의 위치, 그외의 모든 문제를 공식 프로그램에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⑦ 레이스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최종순위와 결과를 발표 할 수 있다.
- ⑧ 기술 검차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오피셜이 제출한 판정의 정정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② 대회특별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히트의 구성이나 경기 주회수를 변경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경기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순위의 변경 또는 출장 정지(실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항소의 대상이 된다.~~
- ~~④ 경기위원장이 위험하다고 보고한 차량이나 선수를 경기 참가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참가 자격이 없거나 부당, 부정 행위를 한 팀 또는 선수를 한 경기 이상 제외시킬 수 있다.~~
- ~~⑤ 정당한 오피셜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코스 또는 일정구역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위원장이나 주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스타트라인, 결승선의 위치, 그외의 모든 문제를 공식 프로그램에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⑦ 레이스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최종순위와 결과를 발표 할 수 있다.~~
- ~~⑧ 기술 검차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오피셜이 제출한 판정의 정정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p>⑨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결석할 경우, 특히 심사위원 세 명의 참석이 필수인 경우에는 한 명, 또는 필요하다면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p> <p>⑩ 경기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심사위원들은 그 권한을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하거나, 원래의 심사위원회를 선택하는 책임을 맡았던 주체가 선택한 심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p> <p>28.7 심사위원의 제한</p> <p>심사위원은 우선적으로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받는 거래, 산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심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으로 공인대회의 위상 및 심사위원회의 품위를 훼손 할 경우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p>	<p>⑨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결석할 경우, 특히 심사위원 세 명의 참석이 필수인 경우에는 한 명, 또는 필요하다면 여러 명을 임명할 수 있다.</p> <p>⑩ 경기 뒤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심사위원들은 그 권한을 후속 심사위원회에 위임하거나, 원래의 심사위원회를 선택하는 책임을 맡았던 주체가 선택한 심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p> <p>28.7 심사위원의 제한</p> <p>심사위원은 우선적으로 경기 결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익을 받는 거래, 산업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심사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으로 공인대회의 위상 및 심사위원회의 품위를 훼손 할 경우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p>
	<p>제29조 경기임원의 임명</p> <p>대회주최자는 경기임원(레이스 디렉터, 경기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책임과 권한은 국내스포츠규정을 따른다.</p>
<p>제29조 안전</p> <p>경기 주최자는 해당 경기와 관련된 모든 장소에서 경기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p> <p>KARA의 판단 하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의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30조 안전 응급 또는 비상 대책</p> <p>경기 주최자는 안전한 대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30.1 보험증서(경기참가자, 관중 보험)</p> <p>30.2 대회 운영 계획서</p> <p>a 오피셜 배치도(코스, 피트, 안전, 의사)</p> <p>b 차량배치도(엠블런스, 구난차량, 코스카, 페이스카, 견인차)</p>

	<p>c 의료대책(의사와 응급구조사, 앰블런스(운전자포함)가 포함된 3인 이상 응급팀이 최소 1팀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응급팀 수는 대회 규모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 경기장 또는 주최자가 지정한 종합병원의 응급 담당자의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긴급환자 발생시 후송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p> <p>30.3 의사는 응급의학과 또는 외과의사(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가 배치되어야 하며 경기장내에서 초록색의 오버올을 착용(Doctor 표시)하거나 의사의 신분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p> <p>30.4 앰블런스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허가필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호흡기 및 심혈관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p> <p>30.5 메디컬 체크는 의사 1명과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참여하여야 한다.</p> <p>30.6 사고대비 유관기관 연락처(지정병원, 소방서, 경찰서)</p> <p>30.7 국제 경기(실버 등급 이상)의 경우 Extrication 연습 및 일정 제출</p> <p>30.8 국제 경기(골드 등급 이상)의 경우 메디컬 센터 운영 계획서와 다음의 차량 배치를 권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소방지원차량(80리터 이상 소화액(물, 폼 소화액 등)이 들어 있는 탱크와 분사기 장착) b. 특수 구조차(유압 커터, 전기톱, 크로우바, 플라이어 등)
--	---

	<p>대회주최자는 FIA ISC 부칙 H 및 표1의 대회종류별 응급팀 구성을 참고하여 응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p> <p><표1. 대회 종류별 응급팀 구성></p> <table border="1" data-bbox="1128 379 2018 724"> <thead> <tr> <th>대회종류</th> <th>응급팀 구성</th> </tr> </thead> <tbody> <tr> <td>FIA 챔피언십 대회</td> <td>ISC Appendix H 준수 (FIA Medical Inspection 필수)</td> </tr> <tr> <td>국제(Zone 포함) 및 국내 챔피언십 대회</td> <td>최소 2팀 이상의 응급팀 구성 (Extrication 팀 포함)</td> </tr> <tr> <td>컵, 트로피, 챌린지 등 (드래그, 드리프트)</td> <td>최소 1팀 이상의 응급팀 구성</td> </tr> <tr> <td>카트, 짐카나 대회 등</td> <td>1대 이상 앰블런스 대기</td> </tr> </tbody> </table>	대회종류	응급팀 구성	FIA 챔피언십 대회	ISC Appendix H 준수 (FIA Medical Inspection 필수)	국제(Zone 포함) 및 국내 챔피언십 대회	최소 2팀 이상의 응급팀 구성 (Extrication 팀 포함)	컵, 트로피, 챌린지 등 (드래그, 드리프트)	최소 1팀 이상의 응급팀 구성	카트, 짐카나 대회 등	1대 이상 앰블런스 대기
대회종류	응급팀 구성										
FIA 챔피언십 대회	ISC Appendix H 준수 (FIA Medical Inspection 필수)										
국제(Zone 포함) 및 국내 챔피언십 대회	최소 2팀 이상의 응급팀 구성 (Extrication 팀 포함)										
컵, 트로피, 챌린지 등 (드래그, 드리프트)	최소 1팀 이상의 응급팀 구성										
카트, 짐카나 대회 등	1대 이상 앰블런스 대기										
<p>제30조 의료 지원, 소방 지원 및 차량 구난[별지3. 예시 참조] 경기 주최자는 매 경기마다 다음의 의료지원팀을 배치하여야 하며, 응급대책(메디컬 플랜)을 마련하여야 한다.</p> <p>30.1 응급 구조사나 응급 의사가 포함된 2인 이상의 응급팀</p> <p>30.2 2대 이상의 앰블런스(기초 종목은 1대 이상)</p> <p>30.3 메디컬 체크를 위한 1인 이상의 의사 및 간호사</p> <p>30.4 외과 상해에 대한 구급 장비(척추보호대, 목 보호대, 들것, 압박붕대 등)</p> <p>30.5 화상에 대한 구급 장비(화상 드레싱 등)</p> <p>30.6 경기장 부근 지정병원 정보(병원명, 병원담당자, 연락처, 이동거리, 이동시간)</p> <p>30.7 소화기의 (경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 개수가 다르다) 배치</p>	<p>제30조 의료 지원, 소방 지원 및 차량 구난[별지3. 예시 참조] 경기 주최자는 매 경기마다 다음의 의료지원팀을 배치하여야 하며, 응급대책(메디컬 플랜)을 마련하여야 한다.</p> <p>30.1 응급 구조사나 응급 의사가 포함된 2인 이상의 응급팀</p> <p>30.2 2대 이상의 앰블런스(기초 종목은 1대 이상)</p> <p>30.3 메디컬 체크를 위한 1인 이상의 의사 및 간호사</p> <p>30.4 외과 상해에 대한 구급 장비(척추보호대, 목 보호대, 들것, 압박붕대 등)</p> <p>30.5 화상에 대한 구급 장비(화상 드레싱 등)</p> <p>30.6 경기장 부근 지정병원 정보(병원명, 병원담당자, 연락처, 이동거리, 이동시간)</p> <p>30.7 소화기의 (경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 개수가 다르다) 배치</p>										

<p>30.8 경기 주최자는 소방 지원 및 차량 구난을 위한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p> <p>30.9 견인차나 견인차에 준하는 견인 장비가 있는 4륜 차량</p> <p>30.10 경기장 부근 지정 소방서</p> <p>30.11 다음은 권고 사항이다</p> <p>① 소생 장비를 갖춘 특수 구급차(소생약, 심전도기, 응급 소생기 등)</p> <p>② 소방지원차량(80리터 이상 소화액(물, 폼 소화액 등)이 들어 있는 탱크와 분사기 장착)</p> <p>③ 특수 구조차(유압 커터, 전기톱, 크로우바, 플라이어 등), 국제경기의 경우</p> <p>FIA ISC 부칙 H의 각 경기 종류 및 카테고리별 응급 및 의료, 소방, 구난 서비스 체계와 장비를 참고하여 대회 규모에 맞는 응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p>	<p>30.8 경기 주최자는 소방 지원 및 차량 구난을 위한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p> <p>30.9 견인차나 견인차에 준하는 견인 장비가 있는 4륜 차량</p> <p>30.10 경기장 부근 지정 소방서</p> <p>30.11 다음은 권고 사항이다</p> <p>① 소생 장비를 갖춘 특수 구급차(소생약, 심전도기, 응급 소생기 등)</p> <p>② 소방지원차량(80리터 이상 소화액(물, 폼 소화액 등)이 들어 있는 탱크와 분사기 장착)</p> <p>③ 특수 구조차(유압 커터, 전기톱, 크로우바, 플라이어 등), 국제경기의 경우</p> <p>FIA ISC 부칙 H의 각 경기 종류 및 카테고리별 응급 및 의료, 소방, 구난 서비스 체계와 장비를 참고하여 대회 규모에 맞는 응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p>
---	---